

# 「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심현정 의원
- 제안일자 : 2023. 10. 30.
- 회부일자 : 2023. 11. 7.

### 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클럽 시책 수립·시행 책무와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·지원 책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### 3. 주요내용

- 평창군 스포츠클럽 시행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3조)
-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(안 제4조)
  - 지정스포츠클럽: 사용료의 100분의 100
  -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: 사용료의 100분의 80
-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교부 (안 제5조)
- 스포츠클럽 회계책임자 지정·운영 및 지도·감독 (안 제6조 ~ 제7조)
  - 사업에 대해 보고 및 자료 요청 가능, 연 1회 이상 지도 및 감독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- 「스포츠클럽법」은 ‘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’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활동을 지원·장려하게 하는 등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.

### 나. 입법의 취지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스포츠클럽법」에 의거하여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4조(지원 및 범위)제1항은 시행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스포츠클럽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 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정함.
- 안 제7조(지도·감독)는 보조금을 지원받은+ 스포츠클럽에 대해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,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 및 지도·감독하도록 규정함.

-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(「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)의 개정을 규정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을 효율적으로 반영함.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선진형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스포츠클럽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다만, 보조금 운영에 있어서 스포츠클럽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**붙임 1 평창군 스포츠클럽 현황**

등록스포츠클럽: 4개소

클럽명	회원수	지원여부(규모)
평창동계스포츠클럽	27명	없음
(사)윈터700 스포츠클럽	16명	연간 12,000천원
평창반다비스야구단 사회적협동조합	26명 (성인 10/유소년 16)	없음
평창 mcs fc 스포츠클럽	70명	없음

지정스포츠클럽: 없음